

#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309
----------	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4월 23일

제안자 : 기획경제위원장

## 1. 수정이유

- 개정안의 “기금전출금”은 일반회계 등의 세출예산 과목이므로 기금의 조성 측면에서 수입항목인 “전입금”으로 수정하고, 나머지 기금 재원도 「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」의 9개 수입 과목에 맞게 일괄정비함.

## 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“기금전출금”을 “전입금”으로 수정함(안 제4조제1항제3호)
- “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 및 예수금”을 삭제하고 “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” 등으로 수정함(안 제4조제1항제4호~제8호)

#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등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(현물 출자를 포함한다)
4.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
5.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
6. 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
7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8.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4조(기금의 재원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</li> <li>2.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·경영 또는 설립한 공기업으로부터의 예수금</li> <li>3.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중 <u>출연금</u> (현물출자를 포함한다)</li> <li>4. <u>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 및 예수금</u></li> <li>5. <u>정부지원금 및 용자금</u></li> <li>6.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<u>자금</u></li> <li>7. <u>용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</u></li> <li>8. 그 밖에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<u>출연금</u> <span style="float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span></li> </ol> <p>②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<u>출연</u>할 수 있다</p>	<p>제4조(기금의 재원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중 <u>기금전출금</u>(현물출자를 포함한다)</li> <li>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6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7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8. <u>그 밖에</u>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<u>기금전출금</u> <span style="float: right;"><u>&lt;신설&gt;</u></span></li> </ol> <p>②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<u>전출</u>할 수 있다.</p>	<p>제4조(기금의 재원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개정안과 같음)</li> <li>2. (개정안과 같음)</li> <li>3.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등 <u>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</u> (현물출자를 포함한다)</li> <li><u>&lt;삭제&gt;</u></li> <li>4. <u>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</u></li> <li>5.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<u>차입금</u></li> <li>6. <u>용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</u></li> <li>7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<u>전입금</u></li> <li>8. <u>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</u></li> </ol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##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출연”을 “전출”로 하며, 안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등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(현물출자를 포함한다)
4.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
5.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
6. 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
7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
8.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기금의 재원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</li> <li>2.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·경영 또는 설립한 공기업으로부터의 예수금</li> <li>3.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<u>중 출연금</u>(현물출자를 포함한다)</li> <li>4. <u>자치구로부터의 적립금 및 예수금</u></li> <li>5. <u>정부지원금 및 융자금</u></li> <li>6.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<u>자금</u></li> <li>7. <u>융자금의 상환수입금 및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입금</u></li> <li>8. <u>그 밖에</u>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<u>출연금</u></li> </ol> <p>②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<u>출연</u>할 수 있다</p>	<p>제4조(기금의 재원)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2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3.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<u>등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</u>(현물출자를 포함한다)</li> </ol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. <u>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</u></li> <li>5.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<u>차입금</u></li> <li>6. <u>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</u></li> <li>7.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<u>전입금</u></li> <li>8. <u>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</u></li> </ol> <p>②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<u>전출</u>할 수 있다.</p>